

❖ 환경논평❖

실천 안되는 재활용촉진법 있으나 마나



이경률 | (사)환경실천연합회장

한국환경자원공사의 '2004년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폐기물 감량현황 통계'에 따르면 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 1147곳에서 나온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2158만 8천톤, 지정폐기물 227만 5000톤 등 총 2386만 3000톤으로 제품 1톤을 생산하는데 폐기물 42.7kg이 발생하고 원재료 대비 폐기물발생률이 4.1%로 집계됐다. 제품 1톤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보다 15.5%, 매출액 10억원당 폐기물량(62.6톤)은 4.7%가 각각 줄었다. 폐기물 중 2031만 7000톤이 재활용(재활용률 85.1%)돼 전년(85.6%)과 비슷했으나 재활용량 자체는 전년의 1567만 7000t보다 23% 늘었다.

이렇듯 재활용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도 성숙하였고 실제로 통계도 증가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재활용촉진법을 토대로 일반 관공서부터 재활용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생활 속의 재활용이 점차 자리 잡고 가고 있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일회용제품은 어떠한가? 일회용 제품에 관해서는 통계자료도 미비하고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를 통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재활용촉진법의 정착 및 활용을 위해 실천내용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포상금제도를 이용한 양팍한 행정은 자자체 담당 공무원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와 관련 업무에 대한 타 상행정의 전형으로 재활용 확산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재활용법률 축진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

재활용촉진법 일회용제품 중 일회용 컵에 관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 도처에 깔려 있는 커피 자판기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재활용업체와의 수거 위탁 계약이 되어야만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련법령의 시행 이후 몇 달간은 어느 정도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거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업소는 재활용

업체에 반드시 위탁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환경실천연합회 산하 재활용사업본부에 따르면 서울경기 40만 여개 요식업소 중 일회용컵 재활용 계약업체는 50% 미만일 뿐이고 계약한 업체에서도 50% 이상이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아 실제 재활용은 20% 미만인 8만 여개 업체뿐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본 법령이 시행되자, 몰지각한 모 환경단체에서 전국 일원의 일회용 자판기 사용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 종이컵을 매월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조건으로 종이컵 수거대를 1대당 일십만원에 판매하고 행방을 감춘, 재활용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해온 환경단체도 파악되었다. 게다가 지하철역,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일회용컵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관련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것으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재활용촉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일회용 컵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재활용촉진법령을 제도화 한 이후 관계당국의지도 단속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정착하기에 힘든 것으로 환경부의 본 업무 소관부서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일회용 종이컵 사용업소 및 재활용 사용 의무품목에 대하여 전국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실련 이경률 회장에 따르면 "국민의식이 성숙되고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재활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때에 어렵게 만든 법률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시행하지 아니 한 만 못 한 것 아니냐며 법과 시행이 따로 노는 재활용촉진법은 효용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환경실천연합회는 법령시행 이후부터, 전국 일원에 재활용 사업부 30개소를 운영하면서, 일회용 종이컵을 수거하여 대한펄프 청주공장에 매월 25톤씩 일정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거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